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05 발의연월일: 2020. 9. 8.

발 의 자:서삼석·송갑석·이개호

임오경 · 전용기 · 주철현

박 정 • 박상혁 • 신영대

이상직 · 신정훈 · 윤후덕

의원(12인)

제안이유

김은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과 칼슘 및 철분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성인병이나 노화의 예방, 숙취해소, 구취 및 탈모 예방 등의 의학적인 효과가 있어 김산업은 웰빙을 중시하는 세계 식품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김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2,200여 어가에서 김 생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20여 개의 마른 김 가공공장과 1천여 개소의 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중에 있음.

특히 우리나라 김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58.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 110여 개 국가로 연간 5억 2천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소위 "식품업계의 반

도체"라 불리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음.

하지만 김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김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김의 품질향상과 김 및 김가공품의 양식·가공·수출 등 김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 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바. 국가는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통해 김 산업 진흥을 위하여 김산업연구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10조).
- 사. 김산업 종사자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과 김 및 김가공품의 양식·가공· 수출 등 김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김"이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 자로 번식하는 홍조식물 김파래목 김파래과 김속 또는 돌김속에 속하는 해조를 총칭하는 다세포 식물을 말한다.
- 2. "김산업"이란 김의 생산·양식·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유통·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 업을 말한다.
- 3. "김가공품"이란 김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 4. "김산업 종사자"란 김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김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5 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김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3. 김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 4. 김양식·생산성 향상 및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 5. 김과 김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장 개척과 홍보에 관한 사항
 - 6. 국제교류 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 7.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을 위하여 매년 김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김산업 연구소를 비롯한 전문연구기관 등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포 장·저장·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 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 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 다.
- 제10조(김산업연구소) ① 국가는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통해 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김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연구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연구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김과 김가공품의 가공·포장·저장·제조기술 및 수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 2. 김용 약제개발 및 김의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개발사업
-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 는 보조할 수 있다.
- ⑥ 연구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⑦ 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

- 제11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김의 품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있다.
 - 1. 우수한 김과 김가공품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 2. 김과 김가공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제조·가공공정 등의 연구·조사
 - 3. 김과 김가공품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 4.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 5. 그 밖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판매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 등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수 있다.
- 제14조(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 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 제15조(세계화 촉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의 육성, 수 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김산업 종사자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김 및 김가공품과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활동
 - 2.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 3. 김산업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 4. 김산업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 5. 그 밖에 김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김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김 과 김가공품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품질인증)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김과 김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 제19조(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과 김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20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김산업진흥구 역을 지정할 수 있다.
 - 1. 김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김산업의 성장 여건 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 2.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김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3.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 ②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하거나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③ 김산업진흥구역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중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김산업진흥구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한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제20조에 따른 김 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김산업진흥구역 실행 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김산업진흥구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취소·개선권고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 제24조(자료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및 김산업을 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